



2017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매뉴얼

사업편



유아랑
정다운
이해진
권안나

CONTENTS

I	매뉴얼 발간 목적 및 내용	1
	1. 발간목적	3
	2. 매뉴얼 구성	3
	3. 매뉴얼 특징	4
I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	5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7
	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지표	9
III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15
IV	분야별 분석평가서 작성사례	27
	1. 공공질서 및 안전	29
	2. 교육	36
	3. 교통 및 물류	43
	4. 농림	50
	5. 문화체육관광	58
	6. 보건	65
	7. 사회복지	72
	8. 산업·통상·중소기업	79
	9. 일반공공행정	87
	10. 지역개발	94
	11. 해양수산	102
	12. 환경	110
V	부 록	119
	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21
	2. 참고자료	133
	3.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참고 사이트	159



I

매뉴얼 발간 목적 및 내용



I 매뉴얼 발간 목적 및 내용

1. 발간목적

- 200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본격 시행되었음.
- 전국 단위 총 17개 시·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 위탁받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울산의 경우, 2012년 127개 사업, 2013년 136개 사업, 2014년 239개 사업, 2015년 263개 사업, 2016년 339개로 대상 사업이 점차 확대 되고 있음.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가 양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들은 대상과제 선정과정,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관, 업무담당자, 기관담당자, 컨설턴트,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라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구조임.
-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배포하고 있으며, 각 주체들은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은 지역의 실정 및 현황에 대한 예시가 부족함.
- 기관-센터-컨설턴트와 같이 각 사업의 주체들이 활용가능한 지침서가 부재한 실정이며, 이 지침서를 통해 컨설팅의 질적수준 제고 및 안정적,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작업은 울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성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2. 매뉴얼 구성

- 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매뉴얼 - 사업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뉨.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추진경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방향성 및 지침에 대한 이해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작성방법)**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의 이해, 근거자료 구체화, 개선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특성에 따른 분석 가이드 라인 등 제시
- **(분야별 분석평가서 작성사례)** 울산광역시 및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5개 구·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를 중심으로 매뉴얼 지침, 유의사항 등 작성사례제시


3. 매뉴얼 특징

-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영역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분야(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농림,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통상·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통일·외교, 해양수산 총14개 영역)를 기준으로 함.
- 이 중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에서 주로 작성된 사업 분야들을 중심으로 총 12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음(과학기술, 통일·외교 제외됨).
- 본 매뉴얼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매뉴얼과 각 영역별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사업담당 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12개 영역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매뉴얼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음.
- 본 매뉴얼은 여성가족부의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각각 사례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정·보완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사업내용, 시기, 예산 등)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사업이 진행되었던 담당기관 및 공무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 하였음.
- 향후, 과학기술, 통일·외교 영역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대상과제 선정 시, 관계기관과 논의 할 예정임.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2.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¹⁾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근거 : 영 제3조)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 사업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

1)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범위 명확화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령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적용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실시방법(법 제18조 관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의 업무
법령	제·개정 자치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
계획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
사업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정책에 대한 자료 협조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분석결과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종합결과보로 제출(다음년도 2월 말)

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지표

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개요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 지자체 :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제외사업 : 분석평가 취지를 살려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상 사업 선정 시 제외(예)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수혜 격차가 커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선정
- '18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17년 예산서 중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17년 과제 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점검 포인트

- 각 실무담당자가 대상사업 선정 시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16.12.20. 공포, '17.6.21. 시행) 제14조

선정기준	해당여부
▶ 수혜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 • 정책(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정책(사업) 수혜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고용, 복지, 안전, 시설설치, 개선 사업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사업,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신도시조성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빈곤층 지원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혜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 정책(사업) •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 기관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법 제9조 및 영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예) 2017년에 분석평가를 실시한 예산 사업 :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2017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2018년 2월말까지).

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추진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 구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사업(p.11 참고)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사업(p.12 참고)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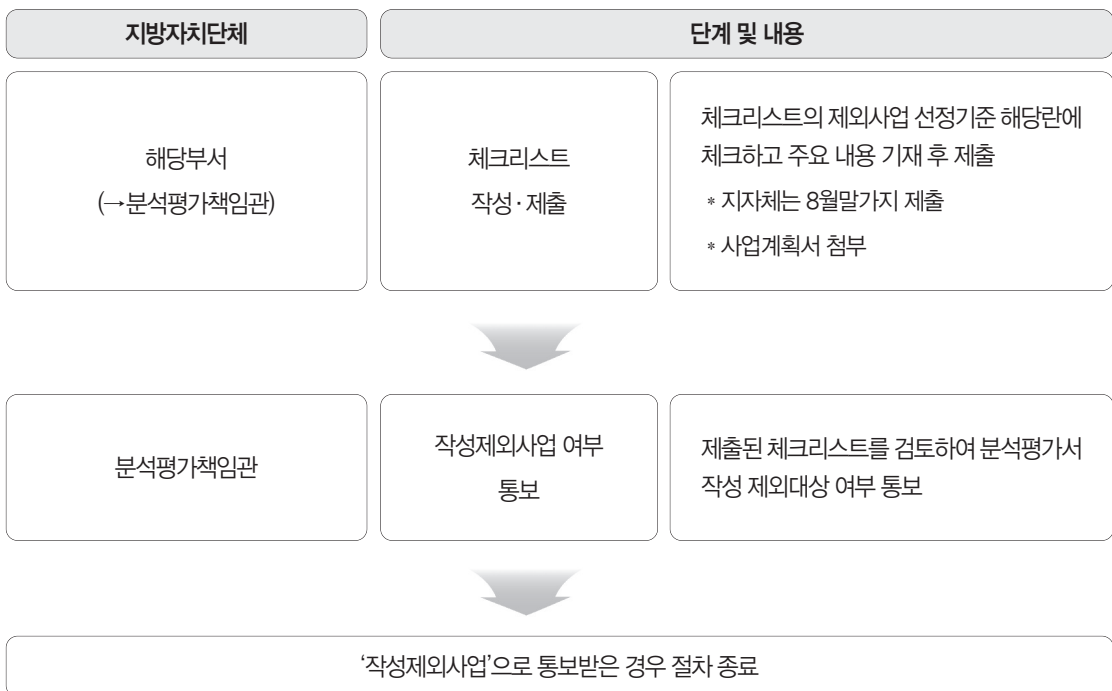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해당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통보 → 체크리스트만 작성, 분석평가 절차종료

(2) 제외사업여부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해당사업이 분석평가서작성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해당부서에 통보.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분석평가책임관은 검토 후, 해당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요청
-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 기간 연장 가능.
(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2) 검토의견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사업의 내용, 수행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4) 반영계획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여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사업 지속 관리



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체크리스트에 기재한 해당 정책분야에 따라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점검포인트 제시

분석평가항목		점검point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④ 법령(지침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4. 예산	⑤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사업	⑥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내용·수행방식(기타제도 개선 포함)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통계구축 등



III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Ⅲ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1. 체크리스트 작성매뉴얼

▶ 여성의 지위향상,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평가서 작성 사업에서 제외 됨. 체크리스트만 작성.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사업임.		
	<input type="checkbox"/> 단위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단위사업인 경우 단위사업명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세부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세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모두 작성		
구분1	신규사업() 계속사업() ▶ 본 사업이 기관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계속 진행된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작성			
구분2	분석평가서 작성 신규 과제()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 ▶ 2012년 이후 1회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경우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과제'에 해당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담당 부서 정보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 담당 부서 정보	성 명
				전화번호
사무 구분 ※ 지자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가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고유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고유사무 ▶ 담당업무의 특성을 파악 후, 해당 분야에 체크			
정책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 <input type="checkbox"/> 농림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산업·통상·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공행정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 <input type="checkbox"/> 통일·외교·국방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 <input type="checkbox"/> 환경 ▶ 중복선택불가 ▶ 선택분야에 따라 GIA시스템 상 분석평가서 작성시 맞춤형 점검포인트 제시 ▶ 정부 BRM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분야 체크			
선정근거 ※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지시사항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 미달성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진근거	▶ 해당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작성 제외 사업일 경우에만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 본인 사업이 작성제의 사업인지 파악 후 해당여부 체크하면 됨. 여성지위향상, 성평등 실현 목적 사업 제외됨.

2. 분석평가서 작성매뉴얼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

▶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에서 작성 시, 분석평가 항목에 대해 분야별 [분석평가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가 제시됨
→ 점검포인트를 참조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 사업명 :

- ▶ 분석평가대상 사업이 세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을 동시에 작성
- ▶ 단위사업일 경우, 단위사업명만 작성

I. 개요

- 사업 목적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 추진 근거 ▶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계획 등 기재
 -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 예산 현황 ▶ 분석평가 대상 사업이 세부사업이면 세부사업에 관한 예산을 작성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 예산만 작성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 분석평가 대상 사업명을 작성 - 단위사업일 경우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일 경우 : 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	■ 회계* (국비 ____%, 지방비 ____%) □ 기금 □ 기타()	▶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 증감액 기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㉔ ·경제적 ^㉕ ·신체적 ^㉖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㉗ <input type="checkbox"/> 없음 ^㉘

▶ 아래의 점검 포인트 참고



점검포인트!

- ㉔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㉕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㉖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㉗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㉘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㉙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㉚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㉛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㉙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㉚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㉛

▶ 아래의 점검 포인트 참고

🔍 점검포인트!

- ⓐ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 성별요구도는 해당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임.
아래 사항은 해당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이 가능함.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사회문화적 차이는 성별에 따른 성장배경차이,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에서 오는 격차를 의미
- 이에 따른 성별에 따라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 해당 사업의 수행 시,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함.
 -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작성
 -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가족 배경(조손가정, 한부모가정, 1인가구 등) 및 거주 환경(반지하, 다가구주택, 상업지구, 공장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인식 및 경험(범죄피해, 이혼, 사별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1 분석 근거 | ※ 위에서 제시한 분석에 따른 근거 제시



- ▶ 관련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
(예)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불안정도, 성별에 따른 안전에 대한 인식, 시간 대 별 남녀 이동 현황 등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경제적 차이는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서 오는 격차를 의미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함.

☞ 해당 사업의 수행 시,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함

-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작성
- ▶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고용 여부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종사산업(서비스직, 생산직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종사 상 지위(비정규직, 정규직, 일용직)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위에서 제시한 분석에 따른 근거 제시



- ▶ 관련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
(예)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격차, 경력단절 사유, 재취업활동 등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신체적(생물학적)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상이한 요구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함.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함.

☞ 해당 사업의 수행 시,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함

-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작성
-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신체적 차이(근력, 방어능력, 장애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연령(여아, 노년 여성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질병(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위에서 제시한 분석에 따른 근거 제시



- ▶ 관련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
(예) 남녀 발생 질병 종류 차이, 남녀 건강평가 차이, 흡연, 금연, 음주 등 차이, 남녀의 신장 차이 등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 사업수혜에 있어 성별특성을 고려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함임.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함.

- ☞ **작성 예)** 본 사업 대상자는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구의 (☆☆☆☆)대상자는 성별비율이 ○○%차이가 있음.
하지만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 따른 (☆☆☆)한 요구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수혜에서의 성별격차가 발생하였음.
 -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 ▶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점검하면서 작성.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작성 예)** ○○시민, ○○군 도서관 이용자 등
↳ 사업의 대상자 범위 작성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 본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전체 수	사업수혜자 (B) ▶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중 사업을 이용하거나, 수혜를 직접 받은 대상자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명	명	%	명	명	%
여성(비율)	명(%)	명(%)	%	명(%)	명(%)	%
남성(비율)	명(%)	명(%)	%	명(%)	명(%)	%

* 통계출처: ▶ 통계출처 반드시 작성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작성이 불가능 한 경우 사유를 필히 작성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모집과정에서 특정성이 더 참여하기 쉬운 환경, 특정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사업의 특성상 특정성이 참여를 하게 됨.'과 같은 분석이 필요.

- ▶ 객관적인 자료(통계, 논문 등) 또는 업무담당자가 지자체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음.
- ▶ 성별형평성은 단순히 남녀비율 50:5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I 반영완료 사항 I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반영한) 내용 등을 기재(아래 표 참고)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요망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 [※]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분석평가항목 중
 '② 성별형평성 - 2.사업수혜에서의 성별요구 반영' 항목에서
 '반영완료'를 체크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작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 ▶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면서 작성.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 제고를 위한 서비스개선, 교육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 P.22의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차이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남녀의 비율에 따른 예산에 대한 남녀 비율 제시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수혜자 비율이 「여성 40%, 남성 60%」로 나타났다면, 예산을 배분비율 또한 「여성40%, 남성 60%」로 계산하여 작성하면 됨.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모집과정에서 특정성이 더 참여하기 쉬운 환경, 특정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사업의 특성상 특정성이 참여를 하게 됨.'과 같은 분석이 필요.
- ▶ 객관적인 자료(통계, 논문 등) 또는 업무담당자가 지자체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음.
- ▶ 성별형평성은 단순히 남녀비율 50:5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I 반영완료 사항 I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반영한) 내용 등을 기재(아래 표 참고)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요망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 [※]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2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분석평가항목 중 '2 성별형평성 - 3.사업수혜에서의 성별요구 반영' 항목에서 '반영완료'를 체크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작성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 앞서 제시한 해당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령 제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선정기준, 여성 비율, 가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양성 사업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야외 현장 관련 작업이 많은 특성상, 휴게시설, 화장실,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관리 및 개·보수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성별 고정관념 제거 또는 양성 평등한 관점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 확대(위원회, 협회 등의 성별 비율 명시)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5. 예산 반영 계획

▶ 앞서 제시한 해당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활용방안 제시

예산증감이 없더라도 개선안을 반영할 경우, 예산을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작성요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화장실 편의시설 확대, 여성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앞서 제시한 해당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토대로 사업내용, 수행방식 제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입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안전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성별 차이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는가?
- 안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 관련 성별 분리 조사를 시행하였는가?
- 안전 서비스 홍보에 대한 지침 또는 기준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홍보 장소, 횟수, 방법 등)
- 담당 인력의 교육·훈련에 성인지 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담당 인력의 교육·훈련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 / 부서명				
부서장	성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IV

분야별 분석평가서 작성사례

1. 공공질서 및 안전
 2. 교육
 3. 교통 및 물류
 4. 농림
 5. 문화체육관광
 6. 보건
 7. 사회복지
 8. 산업·통상·중소기업
 9. 일반공공행정
 10. 지역개발
 11. 해양수산
 12. 환경
- 

IV 분야별 분석평가서 작성사례

1. 공공질서 및 안전

➤ 분석평가서 작성매뉴얼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범죄예방 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설치)

I. 개요

□ 사업 목적

- 관내 주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수집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등 주민 사전동의)

□ 주요 사업 내용

- 위 치 : 관내 방범 취약지역
- 사 업 량 : 방범용 CCTV 25개소
-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 및 설치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범죄예방 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설치)	■ 회계* (국비 __%, 지방비 __%) □ 기금 □ 기타()	150	250	10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㉞ · 경제적 ^㉞ · 신체적 ^㉞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㉞ □ 없음 ^㉞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㉞ ■ 추후개선 ^㉞ □ 해당없음 ^㉞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㉞ ■ 추후개선 ^㉞ □ 해당없음 ^㉞

㉞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㉞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㉞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㉞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㉞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㉞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㉞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㉞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가족 배경(조손가정, 한부모가정, 1인가구 등) 및 거주 환경(반지하, 다가구주택, 상업지구, 공장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인식 및 경험(범죄피해, 이혼, 사별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비율이 높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건의도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범죄피해 및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며, 불안의 주 이유로 인적이 드물거나 보안등이 없음을 꼽고 있는 만큼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여성 근로자 밀집지역 등 우선 설치가 요구됨.
- “통계청 전국 사회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야간보행 시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55.5%로 남성(2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그 사유들 중, ‘인적이 드물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기타’ 순으로 나타남. 특히, 야간 보행 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인적이 드물어서’라고 응답한 부분에서는 여성(62.4%)이 남성(55.8%)보다 높게 나타남.
- “통계청 전국 사회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의 범죄위험에 대하여 ‘매우 불안’으로 응답한 여성이 26.2%로 남성(2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교적 불안’도 여성이 42.6%로 남성(40.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공통으로 ‘안전’보다 ‘불안’을 더 많이 선택 하였음.
-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2016년 울산광역시 통계』의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2016년도의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매우 불안 + 비교적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73.1%이고, 남성은 63.3%로 9.8%p의 차이를 보임.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에서는 2015년도 범죄위험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편(매우 안전하지 않다 + 별로 안전하지 않다)이라고 평가하는 여성은 29.8%, 남성은 23.8%로 나타나, 6%p의 차이가 나타났음.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안전하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울산시민 중에 20~39세의 연령대가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이 여성과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실제 안전에 대한 교육은 학교 및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경향이 크므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및 근로자 중에도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그리고 구직 중에 있거나 실업상태인 시민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 교육이나 안전 훈련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음.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고용 여부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종사산업(서비스직, 생산직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종사 상 지위(비정규직, 정규직, 일용직)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에서는 성비 상 남성비율이 여성보다 6% 높으며, 전체 동을 살펴봐도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모두 높는데, 이는 중공업 및 조선 업계에 근무하는 남성 현장노동직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폭력 뿐만 아니라, 남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신체적 차이(근력, 방어능력, 장애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연령(여아, 노년 여성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질병(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경찰청 '범죄분석통계(2011-2013 평균)'에 따르면,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이러한 점을 통해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구 관내 주민(구 전체)*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B/A)
전체	176,668명	176,668명	100%	174,963명	174,963명	100%
여성(비율)	93,546명 (53.0%)	93,546명 (53.0%)	100%	92,793명 (53.0%)	92,793명 (53.0%)	100%
남성(비율)	83,122명 (47.0%)	83,122명 (47.0%)	100%	82,170명 (47.0%)	82,170명 (47.0%)	100%

* 통계출처 : 2014, 2015년 도 12월 31일 기준 울산광역시 ○○구 인구현황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사업수혜자의 경우, ○○구의 구민 전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집계하였음.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구 전체에서는 성비 상 남성비율이 여성보다 6% 높으며, 전체 9개동에서도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모두 높은데, 이는 중공업 및 조선 업계에 근무하는 남성 현장노동직 근로자가 많아 산업분포상 남초 현상을 보이는 것임.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 제고를 위한 서비스개선, 교육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144백만원	150백만원
여성(비율)	68백만원(47%)	70.5백만원(47%)
남성(비율)	76백만원(53%)	79.5백만원(53%)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구 전체에서는 성비 상 남성비율이 6% 높으며, 전체 9개동에서도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모두 높은데, 이는 중공업 및 조선 업계에 근무하는 남성 현장노동직 근로자가 많아 산업분포상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음. 여성 및 20~39세 연령대의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아서 직장(본청,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을 두루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요청됨)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함.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특히 범죄위험이나 불안을 느끼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선정기준, 여성 비율, 기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양성 사업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야외 현장 관련 작업이 많은 특성상, 휴게시설, 화장실,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관리 및 개·보수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성별 고정관념 제거 또는 양성 평등한 관점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 확대(위원회, 협회 등의 성별 비율 명시)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화장실 편의시설 확대, 여성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성별, 연령, 직종 및 실업여부 등을 고려한 안전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 고려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안전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성별 차이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는가?
- 안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 관련 성별 분리 조사를 시행하였는가?
- 안전 서비스 홍보에 대한 지침 또는 기준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홍보 장소, 횟수, 방법 등)
- 담당 인력의 교육·훈련에 성인지 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담당 인력의 교육·훈련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남초지역이므로,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남성간의 폭력도 예민하게 고려되어야 함.
- 성별, 연령, 직종 및 실업여부 등을 고려한 안전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도입
- 직장(본청, 하청,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서의 안전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강화 지원
- 방법 취약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중심의 안전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강화 지원,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2. 교육

➤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교육

1. 개요

□ 사업 목적

- 정비사업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

□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의 2 규정

□ 주요 사업 내용

- 교육명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교육』
 - 시 기 : 2017년 4 ~ 11월 (7, 8월 제외, 1회 3시간, 6회 실시)
 - 장 소 : 시청, ○○구청, △△구청 대회의실 (순회교육)
 - 대 상 : 일반시민,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및 조합관계자, 정비업체, 공무원 등
 - 위탁기관 : (사) □□협회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민교육	■ 회계* (국비 ____%, 지방비 ____%) □ 기금 □ 기타()	0	10	1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 2017년 추경포함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㉔ · 경제적 ^㉕ · 신체적 ^㉖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㉗ □ 없음 ^㉘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②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㉔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㉕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㉖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㉗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㉘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㉙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㉚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㉛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가족 배경(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비진학청소년, 청년실업자 등의 현황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이 있는가?
-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은 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말하므로 도시의 공간 구성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한 지역(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 노인, 어린이, 실업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의 주민들의 마을생활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함.
-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울산광역시 성별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살펴보면,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 비교적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41.9%이고, 남성은 36.3%로 5.6%p의 차이를 보임. 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 +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12.5%, 남성은 15.8%로 3.3%p의 차이를 보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 성별, 연령대에 따른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추가한 조사가 필요함.

[울산광역시 성별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단위 : %)

구분	2016					
	15세이상 인구	매우 불안하다	비교적 불안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전체	100.0	6.7	32.2	46.9	12.9	1.3
여자	100.0	6.8	35.1	45.7	11.7	0.8
남자	100.0	6.7	29.6	48.0	14.1	1.7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원자료분석.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의 고용 여부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의 종사 산업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가 종사하는 지위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남녀 모두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중요한 부동산은 여전히 남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주로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건전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민 모두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양성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요 재산권의 명의자인 남성중심의 교육이 되거나 교육시간대에 따라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 성별 주택소유 가구주 수]

(단위: 천명)

울산광역시	2015		
	총계	여자	남자
	265	47	218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실, 휴게실, 생활관 등) 이용에 고려해야 할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신장, 신체구조 등)가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에 고려해야 할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방식(교육 장비, 교육 시설 등)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성별 또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상이할 수 있음. 이를테면, 참여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동반 교육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이 참여가능한 시간대, 장소,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교육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 필요함.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교육*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1,173,534명	800명	0.06%	1,172,304	800명	0.06%
여성(비율)	568,645(48.4%)	150명(19%)	0.02%	568,507(48.4%)	200명(0.25%)	0.03%
남성(비율)	604,889(51.6%)	650명(81%)	0.1%	603,797(51.6%)	600명(0.75%)	0.09%

* 통계출처 : 각년도 주민등록상 통계자료(울산광역시)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2016년도에 시작한 신규사업이며, 시민교육 교육생의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지 않았음. 시민교육 총 6회 중 3회 실시 결과 410명 참석 하였으므로, 전체 6회 교육인원은 800명으로 추정하여 작성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 제고를 위한 서비스개선, 교육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144백만원	150백만원
여성(비율)	68백만원(47%)	70.5백만원(47%)
남성(비율)	76백만원(53%)	79.5백만원(53%)

▶ 본 예산은 실제와 차이가 있음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성별, 연령별 지역주민의 참가를 위한 홍보, 시간대 변경 등 노력이 필요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선정기준, 여성 비율, 가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성별 고정관념 제거 또는 양성 평등한 관점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 확대(위원회, 협회 등의 성별 비율 명시)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기본 운영계획에 여성 특전 등 명시

● 기존 시민교육 참가자가 중장년 남성이 대부분이므로, 건물소유주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생활자를 비롯하여, 젊은층, 노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교육내용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 시설 및 장비 마련·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조정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성별, 연령별, 직업별, 주택소유형태 등 다양한 지역주민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교육의 장소 및 시간, 참여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함.
-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 건물주 중심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 남녀노소, 임대인, 임차인 등 주민 모두가 같이 참여해도 위화감이 없을 컨텐츠로 구성해 내는 노력이 필요함.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홍보방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 양성평등한 지원을 위한 조치(선발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발 등)가 필요한가?
-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강사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가?
- 교육생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장비 마련 및 교육시설 개선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양성평등관점에서 성별분리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분리통계를 형성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한 후 특정 성별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이 점을 수정 보완하도록 함.
- 강좌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을 조사하여 향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3. 교통 및 물류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교통행정서비스 제공(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1. 개요

□ 사업 목적

- 노후된 승강장 및 승강장이 없는 정류소를 대상으로 도시형 승강장으로 교체 및 신설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대 시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와 관련하여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주요간선도로변 버스승강장은 대부분 교체되었으나, 현장여건상 교체사업에 제외되었던 구간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우선으로 교체

□ 주요 사업 내용

- 버스승강장 5개소 교체 및 신설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 회계* (국비 ____%, 지방비 ____%) □ 기금 □ 기타()	260	200	△ 6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㉔ · 경제적 ^㉕ · 신체적 ^㉖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㉗ □ 없음 ^㉘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㉔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㉕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업,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㉖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㉗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㉘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㉙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㉚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㉛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거주 환경(농촌, 대학가, 공장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사업의 선호도 및 인식과 경험(기계조작, 물류창고 운영, 파렛트 운반, 트럭 및 컨테이너 운전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접근성(신청기회, 홍보, 정보제공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성별 고정관념(육아 및 돌봄, 가사부담, 혼인상 지위, 대형 중장비 기계조작 선호도 등)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주된 교통수단]

(단위: %)

		시내버스	택시	자기용
성별	남자	30.1	2.3	61.2
	여자	54.7	5.1	38.5

출처: 울산시청, 2015년 울산의 사회지표(조사분석체계 - 00구 편)

-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이용자의 체감 불안도를 낮추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강장 외부에서 보았을 때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 참여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산업 종사자의 성별 비중은 어떠한가?
- 해당 사업에서 산업 종사자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대학 전공(인문계, 이공계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산업 종사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해당사항 없음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의 선호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근력, 신체 활동률, 체력 등)가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연령 및 종사자의 질병(골절, 근육통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산업의 근로환경 개선(기계장비의 소형화, 휴게시설, 방법 및 안전벨, 안전시설, 화장실, 산재예방 프로그램 등)에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1 분석 근거 1

- 대중교통 주 이용자인 여성(임산부)과 보행약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의 편의를 위한 승강장의 단차 해소 및 벤치 등 설치 필요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1 분석 근거 1

- 대중교통 주 이용자인 여성(임산부)과 보행약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편의방안 마련을 위한 승강장의 단차 해소 및 벤치 등 설치 필요
- 사업대상 : 대중교통 이용자*
↳ (사업수혜자 산출은 기 분석평가서에 따름)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357,074명 (100%)	357,074명 (100%)	100%	353,181명 (100%)	353,181명 (100%)	100%
여성(비율)	173,804명 (48.6%)	173,804명 (48.6%)	100%	172,757명 (49%)	172,757명 (49%)	100%
남성(비율)	183,270명 (51.3%)	183,270명 (51.3%)	100%	180,424명 (51%)	180,424명 (51%)	100%

* 통계출처 : 2014, 2015 규정기본통계자료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사업의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 시(또는 구)민으로 수혜자를 구분할 수 없음. 이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전체 시(또는 구)민으로 수혜자로 설정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260백만원	200백만원
여성(비율)	124백만원(48.6%)	98백만원(49%)
남성(비율)	136백만원(51.3%)	102백만원(51%)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수혜자의 성별 격차에 따름.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야외 현장 작업이 많은 경우 휴게시설, 화장실,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관리 및 개·보수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현재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므로 성별분리통계생산을 조례,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여 성별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음.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화장실 편의시설 확대, 여성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성별, 연령대, 장애유무, 임신여부, 자녀 동반 여부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장 설치를 위한 계획이 필요함.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종사자 및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 사업의 산업시설 및 관리에 있어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사업에 관한 홍보(여성특화분야 소개, 여성비중 높은 분야 등)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관한 정보접근 방식(게시판, 현수막, 여성집중시설 방문, SNS 등)에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의 홍보와 관련하여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 및 시설 마련의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신청 시 성평등한 사업 수행을 위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여성 비중이 높은 학교 또는 여성 자격증 취득자가 많은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 및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이용자의 체감 불안도를 낮추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강장 외부에서 보았을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
- 대중교통 주 이용자인 여성(임산부)과 보행약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의 편의를 위한 승강장의 단차해소 및 벤치 등 설치하도록 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4. 농림

➔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농업인대학운영

I. 개요

□ 사업 목적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농촌생활 적응과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 인력 양성

□ 추진 근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법,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농촌진흥청)
- 울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주요 사업 내용

- 교육운영
 - 상·하반기별 운영(6일간, 1일 7시간, 총 40시간)
 - 귀농·귀촌 영농공개 강좌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 대상 영농정착 교육
 - 농업기술교육 : 농업의 이해, 지역여건에 맞는 재배작목별 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농업기계 활용 실습, 사업 계획서 작성방법 등
 - 농촌생활적응 교육 : 농촌공동체 및 전통이해 등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 학습단체 등 지역의 리더와의 멘토링 지원
- 기초 영농정착 교육 후 심화과정(강소농 등)과 연계 농업 전문 인력 양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농업인교육훈련	■ 회계* (국비 ____%, 지방비 ____%) □ 기금 □ 기타()	259	270	11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㉔ ·경제적 ^㉕ ·신체적 ^㉖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㉗ □ 없음 ^㉘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②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㉔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㉕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㉖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㉗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㉘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㉙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㉚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㉛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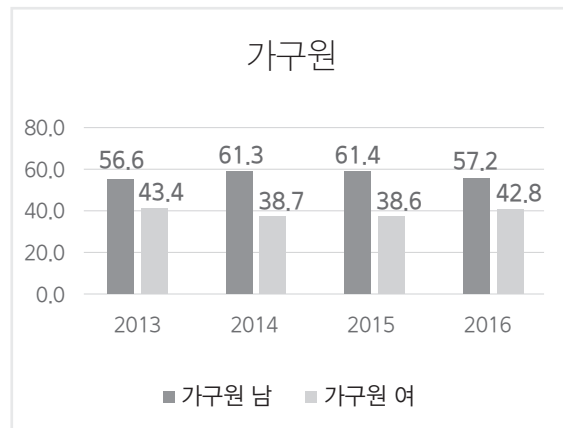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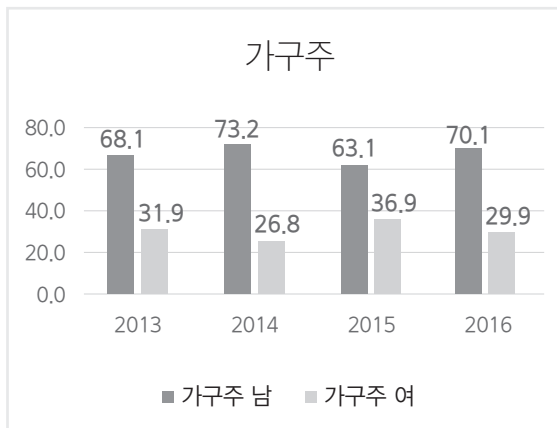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농림부문에 대한 인식 및 경험(농림업 종사자 등록, 경영주 여부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활동하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사, 기타 등)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농촌의 문화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농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I 분석 근거 I

- 농업 및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남성 중심이며, 특히 귀농·귀촌이 주로 가장의 은퇴 후 이루어지는 관계로 교육의 주 수요자가 남성일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남성을 가구주의 지위로 등재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귀농 가구의 가구주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 가구주가 크게 우세하지만(아래 통계표 참고) 가구원의 성별 분포를 보면 간극이 크지 않음.
- 여성 농업인의 경우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여, 여성 농업인의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과 활용도가 낮음.

[울산광역시 귀농가구 가구주 및 가구원의 성별 현황]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2013~2016년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농림부문에 종사하는 형태(농림업 전업, 겸업 등)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영농형태(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농산물의 판매장소나 판매처(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농협, 수집상, 직접판매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도구(농기계와 저온 저장고, 정보화 기기, 교통수단 등)의 보유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근거 I

- 여성은 일반적으로 보조농업인의 지위에 있고, 여성 농업 경영주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노지 밭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경영형태에 있어서 남성과 다른 분야의 농업기술 활용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농가 경영주 성별 분포]

(단위: 가구)

	농가	남성 경영주	여성 경영주
전국	1,088,518	894,446(82.1%)	194,072(17.9%)
울산광역시	12,385	10,166(82.0%)	2,219(18%)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경영주 혼인상태 및 성별 농가(2015)」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영농형태(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농림기구 이용 시 만족도, 편의성, 안전성, 교통 접근성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연령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농작업 특성상 과중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이 많아 주로 농업은 남성이 하는 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영농형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논벼 다음으로 채소,산나물 분야를 중심으로, 남성의 경우 논벼 다음으로 과수분야에 중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서로 다른 교육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여성의 경우 농작업 후, 가사노동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농업기술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편임.

[울산광역시 영농형태별 성별 분포]

	계(명)	여성 경영주		남성 경영주	
계(명,%)	12,385	2,219	100	10,166	100
논벼_노지	5,913	1,173	52.9	4,740	46.6
식량작물_노지	1,383	261	11.8	1,122	11.0
채소·산나물_노지	1,671	357	16.0	1,314	12.9
채소·산나물_시설	114	13	0.6	101	1.0
특용작물·버섯_노지	70	13	0.6	57	0.6
특용작물·버섯_시설	8	-	-	8	0.1
과수_노지	1,976	239	10.8	1,737	17.1
과수_시설	19	-	-	19	0.2
약용작물_노지	72	5	0.2	67	0.7
약용작물_시설	2	-	-	2	0.0
화초·관상작물_노지	90	10	0.5	80	0.8
화초·관상작물_시설	17	1	0.0	16	0.2
기타작물_노지	71	16	0.7	55	0.5
기타작물_시설	39	4	0.2	35	0.3
축산	940	127	5.7	813	8.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경영형태별 분기(2015)」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시민 중 귀농, 귀촌한 시민*(수혜자는 희망자 포함임.)

▶ 본 사업의대상자는 귀농, 귀촌자이나, 수혜자는 귀농, 귀촌자를 비롯하여, 참가 희망자를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음.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78명	127명	1.63명	199명	281명	1.41명
여성(비율)	24명(30.8%)	54명(42.5%)	225%	58명(29.1%)	120명(42.7%)	207%
남성(비율)	54명(69.2%)	73명(57.5%)	135%	141명(70.9%)	161명(57.3%)	114%

* 통계출처 : 귀농귀촌통계(통계청)중 울산가구수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울산광역시 농가 경영주 성별 분포(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혼인상태 및 성별 농가(2015)) 자료를 볼 때 남성 농가경영주가 82.0%, 여성 농가경영주 18.0%로 농업에서 여성의 농가경영주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임.
- ▷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지위는 남성이 취득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2014년 남성 가구주가 70.9%로 여성 29.1%에 비하여 매우 높은 분포를 보임.
- ▷ 사업수혜자의 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여성 경영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임.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20백만원	33백만원
여성(비율)	8.5백만원(42.5%)	14.1백만원(42.7%)
남성(비율)	11.5백만원(57.5%)	18.9백만원(57.3%)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귀농귀촌교육 수료자) 중 남성이 여성인원 보다 많아 예산배분에서 격차가 있음.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성별 비율, 참여 조건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컨설팅 팀, 컨설팅 인증위원회 구성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기본 운영지침(계획)에 여성 특전 등 명시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남성과 여성의 농가경영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개설을 위한 예산 배정 계획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컨설팅 내용에 사업참여자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균형을 위해 참여 조건 완화 및 성비 명시가 필요한가?
- 사업대상자 중 여성의 사업 참여를 위한 물리적 조건(컨설팅 시간,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 사업의 홍보와 관련하여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부부동반 혹은 가족단위로 교육 실시하는 등 여성 귀농·귀촌 가구원 교육 참여 제고
- 농업 기술교육과 농촌생활 적응 교육에 양성이 고루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
-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을 배려해 교육시간 안배 및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여성농업인의 경영형태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내용의 다각화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5. 문화체육관광

➤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1. 개요

□ 사업 목적

-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년층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추진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

□ 주요 사업 내용

- 노인복지시설에 전문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강습교실 운영
 - 대 상 : 60세이상 어르신
 - 지도자 : 24명
 - 장 소 : 복지회관, 경로당 등
 - 종 목 : 요가, 파크골프,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 회계* (국비 __%, 지방비 __%)			
	□ 기금	420	420	0
	□ 기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㉔ · 경제적 ^㉕ · 신체적 ^㉖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㉗ □ 없음 ^㉘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②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㉔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㉕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㉖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㉗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㉘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㉙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㉚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㉛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가족배경(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거주환경(농촌, 도시, 인구밀집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문화시설 이용률, 이용 형태, 이용 목적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문화시설의 접근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비증가로 장수시대의 최대 걱정은 건강문제로 직결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독거가구 거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낮고, 특히 권장수준 미달인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 단위로 사업수행 할 경우 배제되는 노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노인을 해당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단위 : %)

		운동실천율	운동정도			
			비활동	권장수준미달	권장수준	소 계
계		58.1	41.9	14.2	43.9	100
성 별	남 자	63.2	36.8	10.4	52.9	100
	여 자	54.4	45.6	17.0	37.5	100
가 구 형 태	독거노인	57.7	42.3	18.5	39.2	100
연가구 소득	제1오분위	52.5	47.5	17.0	35.5	100

주 : 1) 운동실천율 = 권장수준미달 + 권장수준

2)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소득수준에 따라 문화시설 접근도에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60~70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 보다 훨씬 많음에 따라 주1회 이상 운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남성 보다는 여성이 훨씬 높으나 70대 이상은 남녀가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음.
- 경제력이 없는 여성노인을 위한 무료강습 횟수를 늘리고 70대 이상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주 1회 이상 체육활동 참여율]

(단위 : %)

구분	60대	70대이상
남자	57.5	48.5
여자	61.7	50.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2015)」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시설 이용의 편의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시설 이용의 안전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연령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노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남성 인구수보다 여성 인구수가 훨씬 많음으로 체육활동도 여성 성향의 운동들이 많음. 이에 따라 남성 노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건강상태가 양호한 초기 고령층과 구분하여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후기 고령층을 위하여 활동량이 적으면서도 노인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르신들의 신체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연령별 인구현황]

(인구 : 천명)

구분	총인구수 (%)	연령구간 인구수(%)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1,173 (100)	105 (100)	41	27	19	11	5	1.7	0.4	0.1
남	604 (51)	47 (45)	21	13	8	4	1	0.3	0.1	0
여	568 (49)	58 (55)	20	14	11	8	4	1.4	0.3	0.1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6. 6)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노인 인구*

▶ 본 사업의 수혜자는 [노인복지시설에 전문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강습교실 운영]에 참여했던 수강생 인원으로 표시해야함.

본 분석평가서는 매뉴얼이므로 정확한 수혜자 수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전체 노인 인구로 표시해 둡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103,205명	103,205명	100%	108,798명	108,798명	100%
여성(비율)	58,309명 (56.5%)	58,309명 (56.5%)	100%	60,951명 (56%)	60,951명 (56%)	100%
남성(비율)	44,896명 (43.5%)	44,896명 (43.5%)	100%	47,817명 (44%)	47,817명 (44%)	100%

* 통계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울산광역시, 2016. 6)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구현황을 볼 때 남성(44%)과 여성(56%)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인구가 높음.
- ▷ 노년초기를 지나 중반기 이후에는 성별차이가 나므로 이를 반영하여 운영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420백만원	420백만원
여성(비율)	235백만원(56.5%)	235백만원(56%)
남성(비율)	185백만원(43.5%)	185백만원(44%)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불특정 다수 남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배분의 성별 구분이 곤란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시설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건립 및 관리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해당사항 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선호 체육활동 프로그램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운영시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가?
- 사업 내용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점검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의 홍보자료를 접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시설과 공간을 설계·건립·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주차장, 화장실, 유모차 보관소, 휴게실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활동에 소극적인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강습 프로그램 확대
- 체육활동에 관심이 부족한 여성 및 농어촌지역 노인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 프로그램 확대 편성
- 찾아가는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6. 보건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 개요

□ 사업 목적

-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출산유도 및 영유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강화

□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016년 모자보건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2016년 모자보건사업계획(자체사업계획서), 2016년 임신부·영유아 건강교실계획서(자체사업계획서)

□ 주요 사업 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구분		주요내용	방법
영유아 건강교실	베이비마사지	스킨십을 통한 사회성 발달기회제공	월4회, 14:00~15:00
	두뇌발달놀이	오감놀이교실을 통한 정서발달유도	월4회, 13:00~14:0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어린이 건강증진	■ 회계* (국비 __%, 지방비 __%) □ 기금 □ 기타()	26	26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㉞ · 경제적 ^㉞ · 신체적 ^㉞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㉞ □ 없음 ^㉞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㉞ ■ 추후개선 ^㉞ □ 해당없음 ^㉞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㉞ ■ 추후개선 ^㉞ □ 해당없음 ^㉞

㉞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㉞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업,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㉞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㉞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㉞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㉞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㉞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㉞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가족배경(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독거 등) 및 거주환경(농촌, 도시, 인구밀집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건강 관리 방법(정기검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 질병 경험 및 인식, 본인의 건강 평가 및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영유아 건강교실의 경우, 양육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모'의 출산 및 육아휴직 이후 복직으로 인하여 주요 돌봄자가 참여할 수 있음. 즉, '모'가 주요 돌봄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한 양육자를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2016년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현황에 의하면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기준1.2% 수준에서 2013년에는 3.3%, 2015년에는 5.6%로 상승추세로 본 사업에 영유아를 기준으로 '부'가 참여할 수 있음.
- 즉, 돌봄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음.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표]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여성근로자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남성근로자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 자료: 고용노동부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현황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건강관리 방법에 있어 고용 여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건강관리 방법에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의료기관 접근성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출산 및 영유아시기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병원진료를 제외하고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이와 관련된 강좌 참석이며,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산부인과 병의원과 대형 점포, 즉 백화점과 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분만 산부인과 수업을 제외하고 수업 참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가 많음.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임신부 및 영유아가족의 경우 민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관내 분만 산부인과 임신출산육아 무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임신출산관련	영유아건강관리	비고
○○병원	7	1	무료 수업
○○○○○병원	7	3	임신출산 1강좌 유료 (재료비 부담)
○○여성병원	6	1	무료 수업
○○병원	5	1	임신출산 1강좌 유료 (재료비 부담)

- 또한 본 사업의 운영시간이 대부분 평일 오전 및 오후에 진행하여 직장인의 참여를 제한하게 됨.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건강상태(질병 유무, 질병 유형 등)의 차이가 있는가?
-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건강관리 및 질병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본 사업의 운영시, 주요 참여 양육자가 여성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이 되어 대부분 영유아편의시설이 여성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영유아 대상 사업 운영 시, 참여한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발생가능한 편의시설 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 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영유아 가족*

- ▶ 해당사업의 대상자는 영유아 가족이나 기존 작성된 분석평가서에는 임신부만 작성되어 있었음.
- ▶ 해당사업의 수혜자는 영유아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임.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3,218명	2,500명	77.6%	3,176명	2,392명	75.3%
여성(비율)	3,218명 (100%)	2,500명 (100%)	77.6%	3,176명 (100%)	2,392명 (100%)	75.3%
남성(비율)	0명(%)	0명(%)	0%	0명(%)	0명(%)	0%

* 통계출처 : 관내 보건소 통계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26백만원	26백만원
여성(비율)	26백만원(100%)	26백만원(100%)
남성(비율)	0백만원(%)	0백만원(%)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임신부 및 참여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만 참여 가능하게 운영하였음. 이에 추후 영유아의 부, 조부모, 그 외의 영유아 양육 및 돌봄자 등도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이므로 영유아의 수를 추가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음.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수혜를 위한 내용(성비, 수혜 조건)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검진·검사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위원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본 사업에 ‘모’외의 양육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명, 대상자 규정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건강 상태 차이를 고려한 예산 증액 및 조정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질병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예산 증액 및 조정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수혜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건강관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성별 차이를 고려한 검진·검사내용을 추가·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의 홍보와 관련하여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본 사업의 참여 대상자 선정, 운영시간 등에 '모'의 취업여부, 다문화여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양육자의 개념이 '모'로 한정되지 않도록 남성양육자가 참여했을 경우 필요한 편의시설 확보, 홍보방안, 운영방식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
- 보다 많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 진행, 참여기회에 대한 규정 등의 추가 계획이 필요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7. 사회복지

➤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어린이집 지원(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부모 교육)

1. 개요

□ 사업 목적

- 부모에게 자녀 양육방법 지도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 추진 근거

- 보육사업 일환이자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명 : ○○구 어린이집 재원 학부모 부모교육
- 사업기간 : 2016년 하반기 중
- 사업대상 :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300여명
- 사업내용 :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교육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날 행사및 아동부모교육)	■ 회계* (국비 __%, 지방비 __%) □ 기금 □ 기타()	45,269	44,949	32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㉔ · 경제적 ^㉕ · 신체적 ^㉖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㉗ □ 없음 ^㉘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2.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㉙ ■ 추후개선 ^㉚ □ 해당없음 ^㉛

㉔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㉕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㉖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㉗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㉘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㉙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㉚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㉛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가족 배경(부부중심,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비혼가구, 다문화가족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거주 환경(농촌, 대학가, 공장지역, 상업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일자리에 대한 인식, 경험(취업률, 실업률, 교대제, 창업 등), 선호도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성별 고정관념(육아, 가사부담, 전문성 등)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육아에 대한 남성의 태도가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 등의 참여 독려로 남성의 육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9%를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30인 이상~100인 미만'에서 전년 동기 대비 61.0% 증가했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도 전년 동기 대비 55.8% 증가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다.

지역별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절반 이상(69.2%, 2580명)이 집중돼 있다. 경남, 울산의 증가율도 높은 편이며, 인천, 충남 역시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증가율은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를 기록했다. 아빠의 달 사용이 늘어난 것은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2016. 10. 18.)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가족 배경(부부중심,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비혼가구, 다문화가족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거주 환경(농촌, 대학가, 공장지역, 상업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일자리에 대한 인식, 경험(취업률, 실업률, 교대제, 창업 등), 선호도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성별 고정관념(육아, 가사부담, 전문성 등)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2016년 울산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44.7%, 남성은 76.5%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는 37.9%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 다양한 가족의 증가(한부모, 이혼 가정 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면 교육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6년 울산광역시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경제활동인구	593	211	382
비경제활동인구	378	261	118
경제활동참가율	61.0	44.7	76.5
맞벌이 가구		37.9	

출처 :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세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신체적 차이(출산, 근력, 신체 활동률, 야근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연령(아동, 노인 등)과 질병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작업환경, 근로환경 개선(화장실, 작업대, 휴게실, 교통지원, 기숙사 설치 등)에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본 사업의 경우,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는 없음.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11,522명	300명	0.026%	11,546명	300명	0.030%
여성 (비율)	5,877명 (51.0%)	291명 (97.0%)	0.050%	5,888명 (51.0%)	288명 (96.0%)	0.049%
남성 (비율)	5,645명 (49.0%)	9명 (3.0%)	0.002%	5,658명 (49.0%)	12명 (4.0%)	0.002%

* 통계출처 : 2015~2016년 부모교육 참석대상자(○○자체 자료)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부모교육이 평일에 오전에 진행되어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함.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 높아 예산 배분에 있어서 남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맞벌이 가정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교육시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 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2,5백만원	2,5백만원
여성(비율)	2.42백만원(97%)	2.40백만원(96.0%)
남성(비율)	0.08백만원(3.0%)	0.10백만원(4.0%)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울산광역시 OO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에 비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적어 전체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 수혜자의 비율이 0.03%에 불과함.
- ▷ 또한 기혼여성에 비해 기혼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 평일 오전에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보다 많은 인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등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해당사항 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가족친화기업 연계 등)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고용환경 개선, 여성 대상 직업훈련 확대 등) 또는 예산 항목 조정의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교육시간대 조정에 따라 돌봄공백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필요함.
- 교육 수강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주제, 강의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지원자격, 선발조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가?
-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사업담당자 등의 성별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의 홍보와 관련하여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환경 및 시설 조성의 필요가 있는가?(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모유수유실, 가족휴게실, 직장보육시설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남성의 맞벌이 가정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일정 조정 등의 다방면적 검토가 필요함.
-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진행할 경우, 부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함(돌봄교실 운영 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 관련 기본 성별분리 통계자료(참여자, 요구(교육주제, 참여시간대), 만족도 등)를 구축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8. 산업·통상·중소기업

🔗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 개요

□ 사업 목적

- 최근 경기가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영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요 사업 내용

1)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대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우대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특허보유 건수가 많은 기업 등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 우대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제외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방법 : 은행협조 융자(13개 금융기관)
 - 대출최고 금리 6.92%이하(이자보전 3%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5.92%이하(이자보전 3% 포함)
- 사업비 : 114,500천원(구비)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A)	2017년(B)	증감(B-A)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회계* (사비 __%, 구·군비 100%) □ 기금 □ 기타 ()	114,500	114,500	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㉞ · 경제적 ^㉞ · 신체적 ^㉞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㉞ □ 없음 ^㉞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㉞ ■ 추후개선 ^㉞ □ 해당없음 ^㉞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㉞ ■ 추후개선 ^㉞ □ 해당없음 ^㉞

㉞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㉞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㉞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㉞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㉞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①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②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③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 대상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 추진시 참여자의 애로사항(창업아이템 선정, 점포 개발, 네트워크 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희망하는 창업 업종(의식업, 패션업, 사회적 기업, 유통서비스, 벤처, 경영·컨설팅 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 참여에 있어 가족 형태(한부모가정, 비혼가구, 다문화가구, 노인1인가구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1 분석 근거 1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함.
- 그러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더욱 여성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울산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명, %)

산업별	전체	여성	남성
전산업	506,899	35.1	64.9
농업, 임업 및 어업	144	22.2	77.8
광업	260	7.3	92.7

산업별	전체	여성	남성
제조업	185,223	11.5	8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61	10.3	89.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51	18.6	81.4
건설업	29,929	11.7	88.3
도매 및 소매업	53,200	52.5	47.5
운수업	23,200	10.2	89.8
숙박 및 음식점업	48,265	70.4	2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667	32.7	67.3
금융 및 보험업	13,046	63.9	3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182	52.2	4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593	29.7	7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584	31.0	69.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515	33.8	66.2
교육 서비스업	33,724	67.3	3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418	81.9	1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229	54.0	4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208	48.8	51.2

주: 1) ('07년~): 조사기준시점(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성인지통계

- 또한 울산광역시 ○○구 전체 사업체 수 대비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수는 94.7%로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음.

[울산광역시 ○○구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1)]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8,874	92,707
1 ~ 4명	7,531	13,074
5 ~ 9명	682	4,260
10 ~ 19명	202	2,697
20 ~ 49명	162	5,200
50 ~ 99명	173	12,450
100 ~ 299명	101	15,367
300 ~ 499명	13	4,595
500 ~ 999명	4	2,412
1,000명 이상	6	32,652

출처: 울산광역시 ○○구(2014), 울산광역시 ○○구 기본통계

- 여성대표자 사업체의 수가 전체 8,874사업체 중 4,657개임을 감안할 때, 여성 사업자 수가 약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소득 수준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여성사업자의 다수가 10인 이하 소상공인인 것을 알 수 있음.

[울산광역시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2)]

(단위: 개, 명)

	사업체수	여성대표자 사업체수	1~ 4명	5~ 9명	10~ 19명	20~ 49명	50~ 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명 이상
합계	8,874	4,657	7,531	682	202	162	173	101	13	4	6

출처: 울산광역시 ○○구(2014), 울산광역시 ○○구 기본통계

- 울산광역시 ○○구 여성대표자 사업체의 수가 전체 8,874사업체 중 4,657개임을 감안할 때, 여성 사업자 수가 약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음.
- 앞서 살펴 본 소상공인의 수가 94.7%인 것과 여전히 여성의 소득 수준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 사업자의 다수가 10인 이하 소상공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한 경제적 조건(창업 자금, 창업 공간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교대제, 전일제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소득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전업주부,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등 종사상 지위(비정규직, 정규직, 일용직 등), 혼인상 지위(이혼, 한부모, 사별, 별거, 비혼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여성기업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경영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체 현황조사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분리통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최소한 업체 수 정도는 표시해야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조업체 현황조사의 근거가 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개정이 필요함.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한 공간 및 시설 이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건강상태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본 사업의 경우,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는 없음.

II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해당 사업장(2016년 신규사업)
 - ▷ 본 사업의 대상자는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장임. 하지만 소상공인 및 산업별 전체 통계와 이와 관련한 성별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 울산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함.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0명	0명	0%	888명	27명	3.04%
여성(비율)	명(%)	명(%)	%	13명(1.5%)	3명(11.1%)	23.08%
남성(비율)	명(%)	명(%)	%	875명(98.5%)	24명(88.9%)	2.74%

* 통계출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5). 제조업체현황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수혜자 비율을 보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혜율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남성기업이며, 여성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함. 여성기업에 대한 사업 우선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0백만원	114,500백만원
여성(비율)	0백만원(0%)	12,710백만원(11.1%)
남성(비율)	0백만원(0%)	101,790백만원(88.9%)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전체 제조업에서 여성기업이 극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사업추진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 성별 특성, 성별 고정관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등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선정 기준, 성별 비율, 가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이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체 현황조사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분리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음. 이에 따라 최소 업체 수는 표시하여야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제조업체 현황조사의 근거가 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개정하고자 함.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수혜 균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 또는 예산 항목 조정의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의 성별 수요 및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 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이며 추후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증액하고자 함.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지원자격·선발조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한가?
- 창업 시 경험하는 애로사항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의 홍보와 관련하여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 홍보 시 여성기업 우선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용자 시, 심사요건 완화 및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9. 일반공공행정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시설관리공단 운영

1. 개요

- 사업 목적
 -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행정운영경비)을 전출
- 추진 근거
 -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사업 내용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전출
 - 시설관리공단 자산 취득비 등 전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시설관리공단 운영	■ 회계* (사비__%, 구·군비 100%) □ 기금 □ 기타()	1,892	2,180	288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㉑ ·경제적 ^㉒ ·신체적 ^㉓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㉔ □ 없음 ^㉕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㉔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㉕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㉑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㉒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㉓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㉖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㉗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㉘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거주 환경(도시, 농촌,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생활여건에 대한 생활만족도(소득창출여건, 교육여건, 자연환경, 문화여건, 보건복지 여건, 도로·주택 등의 생활기반 여건, 관광개발 여건, 주민과의 친밀도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을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접근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지역 개발 및 지역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차이가 나는가?

I 분석 근거 I

- WEF(World Economy Forum, 2015)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45개 국가 중 115위로 저조함.
- 특히 경제참여 및 정치,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낮음. 성 격차지수 상위권에 속한 국가의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평등 지수가 국가 경쟁력 지수와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포춘> 500대 기업 중 남녀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50% 이상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음(UN미래보고서 2025, 2011).
-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각국에서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각종 지표와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은 국가정책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 전체의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성평등 지표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하는 상황임.
-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참여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외무고시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20%에서 60%로 3배 늘었고, 행정고시 행정 공안직은 23%에서 48%로, 기술직은 6%에서 22%로 증가했음.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도 2010년 이후부터 40%를 넘고 있음.
- 그러나 의사결정 직위에서의 여성참여 현황은, 공공기관 여성기관장 5.5%, 여성이사 10.6%, 감사 45.3%로 전체 여성임원(기관장/이사/감사) 비율은 8.8%에 불과함. 이는 민간기업의 관리자 비율 17.96%(1,000인 이상), 18.74%(1,000인 이하)에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치임.
- 정부 내 여성참여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31.0%이나 고위공무원단 4.4%, 3급 5.0%, 4급 9.4%, 5급 16.1%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문미경 외, 2013, 정부 및 공공기관 성평등 관리지표 개발, 여성부, pp3-4).
-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참여 수준을 높이는 일은 국가, 지자체 등 각 정부조직의 당면과제이며, 그동안 지체되었던 공공부문의 조직 내 인사관리 및 제반 영역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지역 생활의 편의·안전과 관련하여 소득 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참여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가?

I 분석 근거 I

- 해당사항 없음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지역 생활의 편의·안전과 관련하여 신체적 차이,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해당사항 없음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자격을 갖춘 자*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53명	25명	47.2%	52명	25명	48.1%
여성(비율)	1명(1.9%)	1명(4.0%)	100.0%	1명(1.9%)	1명(4.0%)	100.0%
남성(비율)	52명(98.1%)	24명(96.0%)	46.2%	51명(98.1%)	24명(96.0%)	47.1%

* 통계출처 : 내부 자료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욕구에 부응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체육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음.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의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은 2016년 현재 복지시설 6개, 문화관광시설 6개, 체육시설 13개, 사업시설 5개와 부속시설 6개로 주민의 생활편의 및 지역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반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장이 임면하고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장이 임면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 ▷ 비상임이사 중에는 행정지원국장, 생활복지국장, 복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 당연직 이사가 포함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공공행정조직의 성별로 위계화 된 구조가 여과 없이 반영되고 있음.
- ▷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조례에 따르면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이므로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로 볼 수 있음. 주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반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에 성별로 다른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1,892백만원	2,180백만원
여성(비율)	73.16백만원(4.0%)	87.2백만원(4.0%)
남성(비율)	1755.84백만원(96.0%)	2092.8백만원(96.0%)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당연직을 제외한 사업대상자 및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이사회(의)의 주요 기능은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인데, 주민의 복리, 즉 남성 뿐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사항도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비율 향상을 위한 정관 또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선정 기준, 가점, 성비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위원회 성별 비율 명시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공단 홈페이지에, 조례에 의거하여 공단 임원 및 직원의 임면과 이사회(의)의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정관'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의)의 구성 비율에서 남녀의 균등한 참여를 제시함.
- 따라서 향후 조례(정관) 개정시, 한 성(性)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이사회(위원회) 성별고려 조항을 삽입을 권고함.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요구 차이 반영 및 성별에 따른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주민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의 배치와 시설 마련의 필요가 있는가?(주차장, 화장실, 공원, 도로, 교통 신호 등)
- 사업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한가?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운영과 관리 책임 주체로서 정기적으로 여성친화적 시설 설치 기준 적용 및 점검이 수행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이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성별분리 통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등 구축이 필요함.
-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상 3년 주기로 자치단체 주관 하에 공단에 대한 조직 진단이 의무화 되어 있음. 조직진단 지표에 행정관리 조직구조의 성평등 지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10. 지역개발

➤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 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 교육 및 자치활동의 내실화

□ 추진 근거

- 울산광역시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주요 사업 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우수 주민자치사업 발굴 육성
 -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활동 추진
-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회계* (국비 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712	696	△16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㉑ ·경제적 ^㉒ ·신체적 ^㉓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㉔ □ 없음 ^㉕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②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㉔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㉕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㉑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㉒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㉓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㉖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㉗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㉘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지역주민의 거주 환경(도/농, 구/신시가지,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소득창출여건, 교육여건, 자연환경, 문화여건, 보건복지 여건, 도로·주택 등의 생활기반 여건, 관광개발 여건, 주민과의 친밀도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 참여 과정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평일 낮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과 20~39세의 경제활동 참여 및 돌봄(육아)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이용률이 저조함.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여가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별 유형별로 개수의 차이가 많이 나타남. 따라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성별·연령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특히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간대 차별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중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로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주부,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족 대상, 장애인대상 등 대상별 지역복지프로그램 개설이 차별화가 필요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울산	969	25	661	72	12	109	87	3

* 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행정실 > 지방자치제도(2016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2016. 12. 31. 기준.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 인원(1개소당)]

(단위: 명)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울산 (5)	916.2	232.6	683.6	23.6	10.8	12.8	130.2	40.2	90.0	440.6	91.4	349.2	321.8	90.2	231.6

* 출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행정실 > 지방자치제도(2015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2016. 1. 1. 기준.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소득창출여건, 교육여건, 자연환경, 문화여건, 보건복지 여건, 도로·주택 등의 생활 기반 여건, 관광개발 여건, 주민과의 친밀도 등)와 관련하여 소득 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2016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52.1%, 남성이 73.9%로 큰 차이를 보임. 이는 남성은 주로 낮 시간에 경제활동 참가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울산광역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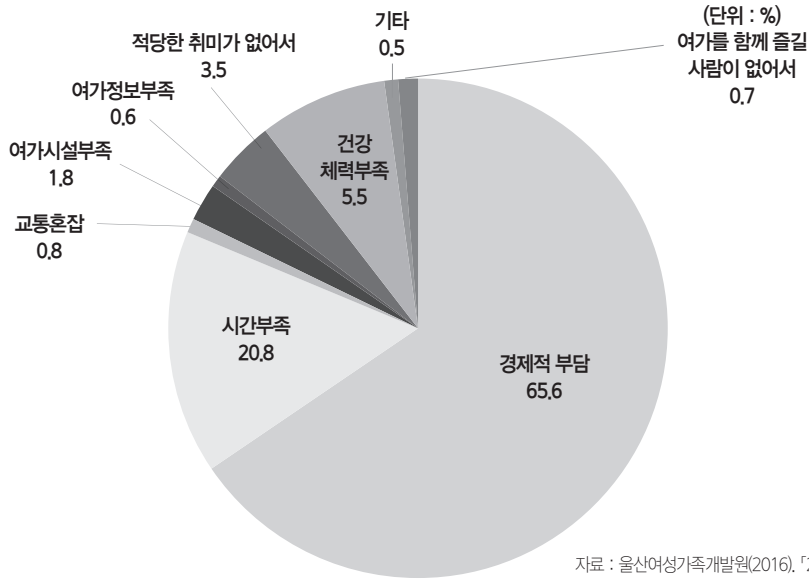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시 도 별	성 별	2015						2016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교용률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교용률
울 산 광 역 시	계	956	578	379	60.4	2.9	58.7	971	593	378	61.0	3.8	58.8
	남 자	491	378	113	76.9	2.6	74.9	500	382	118	76.5	4.2	73.2
	여 자	466	200	265	43.0	3.2	41.6	471	211	261	44.7	2.9	43.4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또한 2016년 울산 성인지 통계를 보면,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강료가 저렴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 된다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만족 할 만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지역생활의 편의와 안전과 관련하여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지역생활의 편의와 안전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해당사항 없음

II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 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OO구 주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349,328명	명	%	338,082명	명	%
여성(비율)	170,936명(49%)	명(%)	%	165,625명(49%)	명(%)	%
남성(비율)	178,392명(51%)	명(%)	%	172,457명(51%)	명(%)	%

* 통계출처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2015년, 201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작성시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있어 남·여 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움.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평일 낮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적음.

I 반영완료 사항 I

-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새벽 또는 저녁에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 개선하고 있으므로 직장인들로 참여가능 할 것으로 보임.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6년	2015년
전체	712 백만원	696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2016, 2017년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성별 구분칸을 작성하지 않아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이 불가능함. 추후 수강 신청 시 성별 분리칸을 추가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야 함.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사항 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있어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선정기준, 여성 비율, 가점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양성 사업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야외 현장 관련 작업이 많은 특성상, 휴게시설, 화장실,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관리 및 개·보수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성별 고정관념 제거 또는 양성 평등한 관점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 확대(위원회, 협회 등의 성별 비율 명시)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해당사항 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화장실 편의시설 확대, 여성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사업에서 종사자 및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사업에서 시설 및 관리에 있어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사업에서 사업에 관한 홍보(여성특화분야 소개, 여성비중 높은 분야 등)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관한 정보접근방식(계사판, 현수막, 여성집중시설방문, SNS 등)에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 및 시설 마련의 필요가 있는가?
- 해당사업 참여자 모집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가?
-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 및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평일 낮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어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편임.
- 따라서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시간대 등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평일 새벽 또는 저녁시간 대로 운영할 계획이나, 주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말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상담 및 아버지 학교, 가족캠프, 가족요리체험, 놀토랜드, 주말영화 상영 등으로 매월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남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남자 어르신 요리교실", 노인층을 위한 "근력운동프로그램",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으로 공가, 폐가를 이용한 "주말 텃밭 가꾸기" 등을 신설할 방안이 필요함.
- 2015, 2016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작성 시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있어 남·여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수강신청서 작성 시 남·여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야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는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 만족도 조사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프로그램 종료시점에 맞추어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신규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시설 만족도, 프로그램 다양성, 강사자질, 프로그램의 질, 수강료).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11. 해양수산

➤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어촌체험마을 조성)

1. 개요

□ 사업 목적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어촌생활문화 관광자원화

□ 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 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도농교류촉진법 제6조(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주요 사업 내용

- 체험준비동 건립
- 체험장 조성(해양생태학습장 진입잔교시설)
- 체험마을 안내센터(객실, 옥상)보강
- 체험장비 구입(공기통, 공기통 충전 콤프레셔)
- 체험장비 보관시설, 안내간판 시설
- 체험관리선 구입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어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 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기금 □ 기타()	110	660	▽55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㉑ ·경제적 ^㉒ ·신체적 ^㉓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㉔ □ 없음 ^㉕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②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㉔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㉕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㉑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㉒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㉓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㉖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㉗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㉘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 본 평가서는 통합하여 작성하였음

[체험프로그램별 평점]

(단위 : %)

체험프로그램	평점
갯벌 체험	5.45
공예 체험	4.58
낚시	4.92
해양레저 활동	5.13
생태학습	4.87
어촌경관 감상	5.49
역사문화 체험	4.94
요리·먹거리 체험	5.66
전통어업 체험	4.74
지역 축제·이벤트 참여	5.04

* 출처 : 수산정책연구(2010),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 김봉태·이승우(2010)에 따르면, 체험프로그램의 선호도는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은 갯벌체험, 공예체험, 어촌경관 감상, 역사·문화 체험, 먹거리 체험, 지역 축제·이벤트 참여 등을 선호하였고, 남성은 낚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갯벌체험, 공예체험, 낚시, 해양레저 활동, 생태학습, 지역·축제 이벤트 참여를 선호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역사·문화 체험, 전통어업 체험을 더 선호하였음.

[방문 시 동반자 선호(복수응답)]

(단위 : %)

시기	가족	친구	연인	기타
비율	70.3	15.8	13.6	0.3

* 출처 : 수산정책연구(2010),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 체험프로그램의 방문 시 동반자 선호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에만 가족 보다는 친구와 연인이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어촌체험마을 선호 이유로는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체험프로그램이 매력적임, 성장기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됨, 교통여건 개선 또는 체험마을 인접, 여행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짐, 방문 정보를 접하기 쉬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성장기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되어 선호한다는 이유는 다른 연령대 보다 30대, 4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어촌체험마을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선호 이유	비율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71.0
체험프로그램이 매력적임	33.7
성장기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됨	32.0
교통여건 개선 또는 체험마을 인접	14.2
여행비용이 비교적 적게 듦	9.6
편의시설이 잘 갖춰짐	7.8
방문 정보를 접하기 쉬움	3.7

* 출처 : 수산정책연구(2010),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 이는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성장기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어촌체험마을 기피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기피이유	비율
편의시설이 불편함	52.5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36.3
체험관광 정보를 구하기 힘들	30.6
체험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움	25.3
마을정비가 부실하고 불결함	18.8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	13.5
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9.5

* 출처 : 수산정책연구(2010),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 어촌체험마을 기피 이유로는 ‘편의시설이 불편함,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 체험관광 정보를 구하기 힘들, 체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움, 마을정비가 부실하고 불결함,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 여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은 체험마을의 특성 상 여성 및 아동 친화적 관점으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성별·연령별로 체험관광 정보를 얻기 쉽도록 정보지를 다양한 곳에 배치하고, 연령별로 주 이용 SNS에 차이가 나므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가족 배경(보수적 가족문화, 성평등한 가족문화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사업대상자의 거주 환경(어촌, 농촌, 도시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사업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있는가? (예) 어업은 남성적 직업이라는 인식 등
- 해당 사업 관련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예) 어업활동에 대한 인식 및 경험(원양어업, 근해어업, 채취활동, 양식, 가공 등)에 따른 성별 차이

I 분석 근거 I

- 통합하여 작성함.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 관련 종사자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사업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소득 수준 및 종사산업의 차이가 있는가?
(예) 어업활동 유형(어선운영, 양식, 그물수선 등)에 따른 성별 차이, 고소득 어업활동에 대한 접근성(교육기회, 참여기회, 정보제공 등)에 대한 성별 차이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장애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통합하여 작성함.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연령(청년, 노인 여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 관련 종사자의 질병(골절, 근육통, 잠수병, 허리통증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의 환경(휴게시설, 방범 및 안전벨, 화장실 등)상 성별의 다른 요구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통합하여 작성함.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사업대상 : ○○어촌체험마을 조성(울산광역시민, ○○어촌체험마을 이용자)*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1,199,717명	7,188명	0.60%	1,199,717명	6,720명	0.56%
여성(비율)	578,202명(48%)	3,740명(52%)	0.65%	578,202명(48%)	3,562명(53%)	0.62%
남성(비율)	621,515명(52%)	3,448명(48%)	0.55%	621,515명(52%)	3,158명(47%)	0.51%

* 통계출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계>울산통계연보>2016. 12월 인구현황.)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특성상 참여자에 의해 수혜자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수혜자를 미리 특정 할 수 없음.
- ▷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체험장으로 여성 및 아동의 편의시설을 및 안전을 좀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I 반영완료 사항 I

● 수혜자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화장실 좌변기의 경우 남자화장실은 1개이며 여자화장실은 2개를 설치하여 성별격차를 반영하였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110백만원	690백만원
여성(비율)	57백만원(52%)	366백만원(53%)
남성(비율)	53백만원(48%)	324백만원(47%)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어촌체험마을을 조성 예산을 주전어촌체험마을 이용자의 성별 비율로 나눔.
-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발생한 성별격차임.

I 반영완료 사항 I

- 추후 ○○어촌체험마을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성별격차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하여 배분 예정임.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선정 기준, 가점, 성비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휴게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등)을 고려한 시설조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위원회 성별 비율 명시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해당사항 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사업과 관련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대, 여성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체험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후에 예산 반영
- 시설이나 장비에서 여성, 가족 편의시설 공간 예산 반영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참여자 모집 시 성별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가?
-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조성의 필요가 있는가? (휴게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등)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성별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 성별·연령별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성별·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 마련
- 시설이나 장비에서 여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 체험프로그램 강사의 성인지 교육 포함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12. 환경

➤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

(울산광역시 ○○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음식물 재활용(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1. 개요

□ 사업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발생억제 주민참여 활성화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 강화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 울산광역시 ○○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주요 사업 내용

- 빈그릇 희망운동 전개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 주택 인센티브 제공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우수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 공동주택 개별계량(RFID) 시범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 우수 처리시설 견학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 회계* (국비 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8	46	▽ 38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에 “■” 표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㉑ ·경제적 ^㉒ ·신체적 ^㉓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㉔ □ 없음 ^㉕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② 성별 형평성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㉖ □ 추후개선 ^㉗ ■ 해당없음 ^㉘

㉔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㉕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㉑ **'사회문화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㉒ **'경제적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㉓ **'신체적 차이'** :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㉖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㉗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㉘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가족배경(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독거 등) 및 거주환경(농촌, 도시, 인구밀집 지역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사업대상자의 거주 환경(농촌, 도시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 관련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예) 어업활동에 대한 인식 및 경험(원양어업, 근해어업, 채취활동, 양식, 가공 등)에 따른 성별 차이

I 분석 근거 I

-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주로 가정 내 가사노동을 담당해 왔던 여성의 일로 인식하는 반면, 남성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가사일을 담당하는 시간도 적고 인식 또한 낮은 편임.
- 궁극적으로 음식물 재활용은 특정 계층, 특정 성에 한정된 실천사항이 아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해야하는 사업으로, 각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사례들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음식 관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맞벌이가구·외벌이 남편, 아내 가구별 평균시간]

(단위: 분)

가구 유형별	행동 분류별	2014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맞벌이 가구	가정관리	1:31	0:28	2:38	1:20	0:21	2:24	1:54	0:42	3:10	2:02	0:51	3:18
외벌이 (남편)가구	가정관리	2:15	0:27	4:13	2:13	0:19	4:18	2:19	0:43	4:03	2:21	0:54	3:55
외벌이 (아내)가구	가정관리	1:59	1:26	2:25	1:54	1:32	2:10	2:05	1:11	2:52	2:21	1:10	3:18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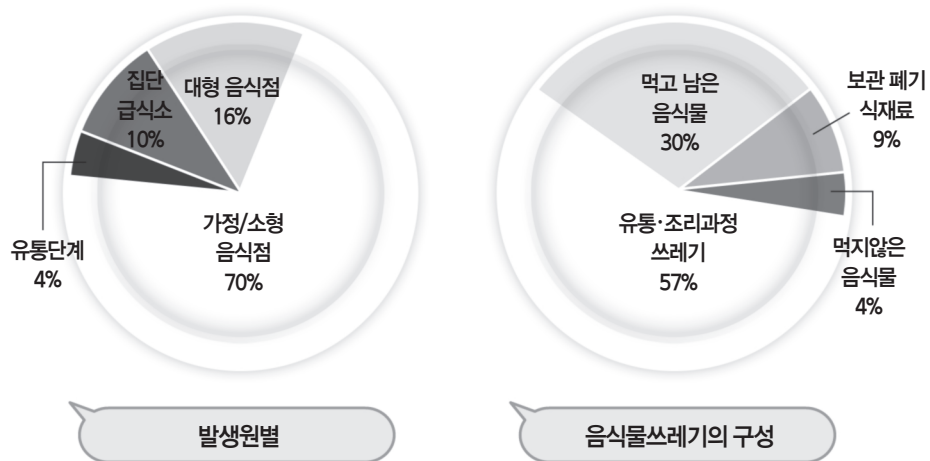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 관련 종사자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에서 사업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장애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는 없으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외식증가로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박재홍·장재봉(2012)²⁾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다양한 외식 소비를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외식소비에 대한 선호를 충족할 수 있어 외식소비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음.
-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음식 비율 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외식 증가 등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 음식점에서 반찬 과다 제공 등의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는 국민의식에 있음.



출처 : 환경부 「낭비없는 음식문화 나무터 실천 리플렛」

- 가정내에는 음식물 구매·보관(일주일 단위로 식단구성,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 날개 포장 제품 구입, 반가공·갈끔포장된 식재료 구매,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 구매, 장을 본 후 바로 손질, 냉동보관 시 한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식재료별 보관법 파악,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용기 사용·보관,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 주로 먹는 반찬은 쟁반에 함께 담아 보관), 조리 시(외식할 땐 미리 집에 알려주기, 가족 식사량에 맞게 요리, 멸치, 건새우 등 건재료는 갈아서 조리, 계량기구를 활용하여 적정량 조리, 음식 맛은 짜지 않게), 식사(밥상머리 교육 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과일 껍질째 먹기), 잔식활용(식재료 껍질을 육수 등에 활용,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요리 도전,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 배출(물기제거 후 배출, 종량제 실시)등을 안내하여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식당에서는 음식물 구매·보관(업소능력에 맞게 식재료 구매, 식품 보관상태 및 잔반 발생량을 고려하여 식재료 구매), 조리 시(반찬류는 알맞게 썰어서 제공, 하나의 식재료로 다양한 메뉴 구성), 주문 상차림(적정량 주문하도록 종업원이 적극 권유, 어린이를 배려하여 소아용 메뉴판매, 소형 밥공기 및 찬기 사용), 식사(제공되지 않은 조리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 음식물 종량제 실시 등을 안내하여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외식부문별 소비구조 분석」.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연령(아동, 노인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 대상자의 질병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의 환경(휴게시설, 방법 및 안전벨, 화장실 등)상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가?

I 분석 근거 I

- 성별, 연령별, 맞벌이, 비맞벌이, 1인 가구(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일 및 방법, 배출 장소에 따른 다른 요구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특히 독거노인 및 노약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성별, 연령별, 가구특성에 따라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자료 배치 장소 및 홍보물을 다르게 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예시) 노인을 위한 글자 사용, 외국인 및 아이를 위한 픽토그램 사용 등.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 단순히 50:50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성별격차를 고려한 실질적인 참여를 고려
-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I 분석 근거 I

-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여 성별 특성 구분 없이 참여 및 실천이 필요함.
- 지속적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최근 맞벌이 가구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직접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민 전체*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181,207명	181,207명	100%	179,333명	179,333명	100%
여성(비율)	83,987명(46.3%)	83,987명(46.3%)	100%	83,947명(46.8%)	83,947명(46.8%)	100%
남성(비율)	97,220명(53.7%)	97,220명(53.7%)	100%	95,386명(53.2%)	95,386명(53.2%)	100%

* 통계출처 : 울산광역시 ○○구 홈페이지(○○구 소개)구정운영(일반현황)인구(세대현황)각연도 12월 기준.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특별히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음.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I 분석 근거 I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8백만원	46백만원
여성(비율)	3.7백만원(46%)	22백만원(47%)
남성(비율)	4.3백만원(54%)	24백만원(53%)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음식물재활용 사업 예산을 ○○구민 전체의 성별 비율로 나눔.

I 반영완료 사항 I

● 해당없음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수혜를 위한 내용(성비, 수혜 조건)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선정 기준, 가점, 성비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휴게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등)을 고려한 시설조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분석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위원회 성별 비율 명시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해당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분석평가 결과, 사업과 관련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성별격차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대, 여성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한가?
- 분석평가 결과,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해당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해당사업 개선안 기재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참여자 모집 시 성별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가?
-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조성의 필요가 있는가?(휴게시설, 화장실, 안전시설 등)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성별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 남성들의 직장인 관내 기업체 사보 게재.

▷ 기업체 등에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집중배부.

▷ 또한 성별, 연령별, 가구특성에 따라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자료 배치 장소 및 홍보물을 다르게 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예시) 노인을 위한 글 글자 사용, 외국인 및 아이를 위한 픽토그램 사용 등.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생략)



부 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2. 참고자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참고 사이트



V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

가. 설치 및 기능

-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둔
- 2) 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개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15.1.12.)로 중앙위원회 기능에 포함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0조 및 제11조)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
 -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 ※ 민간위원 위촉 시 현장활동가 포함
- 2) 임 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의2)

가. 설치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둠

나. 기능, 구성 및 운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해당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지방위원회는 분석평가 제도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위원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법제처)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법 제14조, 영 제12조)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GIA시스템 > 성별영향분석평가 > 운영실적 > 분석평가책임관 등록 메뉴 이용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무를 총괄함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실무담당자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실무담당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분석평가 운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가. 평가기관의 기능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지역센터 관리·지원(지역센터 예산·사업배분, 실적 평가·보고·모니터링 등)
 - *센터 미지정 지역 관리 및 지원(인근센터 등에 지정 및 연계)
 - 지역센터 컨설팅지원 및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자문
 - 심층분석 및 정책개선 모니터링 운영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선·개발 지원
 - 제도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우수사례 발표회(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홍보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대국민공모 포함)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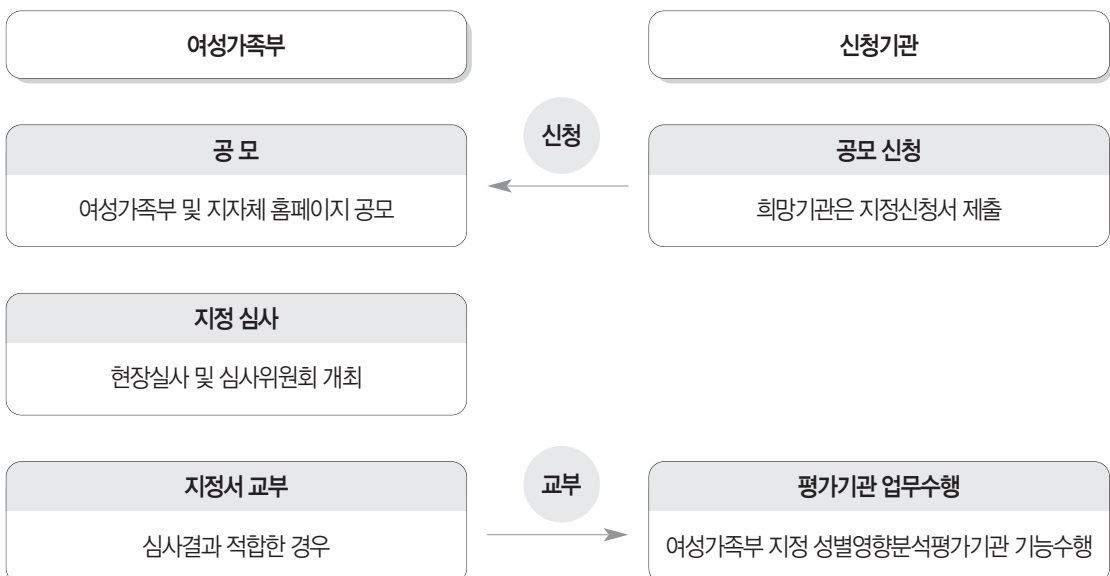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평가기관의 지정

- 1)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 2)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4) 지정 대상
 - 다음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연구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17.6.21. 시행)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5) 지정 절차



*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참조

평가기관 지정현황('16. 12월 기준, 16개 지역 총 17개소)

지역	구분	기관명	지정기간
서울	중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5. 10 ~ '18. 5. 9
서울	지역	서울 여성 가족 재 단	'15. 11. 5 ~ '17. 12. 3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5. 11. 5 ~ '17. 12. 31
대구		대구 여성 가족 재 단	'15. 6. 25 ~ '18. 6. 24
인천		인천 여성 가족 재 단	'16. 1. 10 ~ '18. 12. 31
광주		광 주 여 성 재 단	'16. 9. 5 ~ '18. 12. 31
대전		대 전 세 종 연 구 원	'15. 3. 20 ~ '18. 3. 19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5. 5. 21 ~ '18. 5. 20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5. 5. 10 ~ '18. 5. 9
강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16. 6. 1 ~ '18. 12. 31
충북		충북 여성 발전 센터	'15. 9. 7 ~ '17. 12. 31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 5. 10 ~ '18. 5. 9
전북		전 북 연 구 원	'15. 5. 21 ~ '18. 5. 20
전남		전 남 여 성 플 라 자	'15. 11. 5 ~ '17. 12. 31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5. 1. 15 ~ '18. 1. 14
경남		창 원 대 학 교	'15. 3. 20 ~ '18. 3. 19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 1. 1 ~ '17. 12. 31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관련)

가. 개요

-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GIA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지원체계 구축
-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8조제2항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사이트주소 : <http://gia.mogef.go.kr>(행정망 및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

* (행정망IP) <http://10.188.131.175>

- 권한구분

그룹	권한	내 용
공무원	업 무 담 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계획, 사업 담당자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반영결과 제출서 작성·제출
	기 관 담 당	해당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총괄 - (공통)기관별 종합결과보고, 교육실적 및 분석평가책임관 현황 등록 - (지자체)검토의견 통보, 반영결과 관리
	운 영 담 당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등
	관 리 담 당	여성가족부의 GIA시스템 관리자
외부 전문가	컨 설 터 트	컨설팅 과제 열람 및 작성
	분 석 전 문 가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 컨설턴트이면서 분석전문가인 경우 분석전문가로 회원가입
	센 터 담 당	센터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

* 상위 권한에는 하위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 공무원 : 관리담당 > 운영담당 > 기관담당 > 업무담당
- 외부전문가 : 센터담당 > 분석전문가 > 컨설턴트

나. 특징

- 한글 적용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결과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한글 적용하여 작성, 편집, 다운로드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전자결재 연계(결재 단계에서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 대상기관
 - ▶ 온나라 시스템 사용 기관
 - ▶ 새울행정시스템 사용 기관 중 전자결재로 온나라를 사용하는 기관
 - * 이외의 기관은 GIA시스템 내부결재 기능을 이용하여야 함
 - 기안 단계에서 '연계기안' 선택 후 온나라에서 결재, 전송하면 GIA시스템의 해당과제는 자동으로 제출로 상태가 변경됨
 - 해당 기관의 온나라 담당자가 시스템 간 '연계 환경설정'*을 하여야만 연계 가능
 -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계시판 > 1. 온나라 연계 환경설정 자료 참조
- 앞 단계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체계
 -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 검토의견 통보서 → 반영계획 제출서
 - * 예) '검토의견 통보서' 작성은 앞 단계인 '분석평가서'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한 후에 가능하며, '검토의견 통보서'를 일단 작성
 - 저장된 후에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로 클릭하여 이후 절차 진행
-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GPKI인증서 등록 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요청자		승인권자
모든 업무담당	...	해당 기관의 기관담당
기초자치단체 기관담당	...	광역자치단체 기관담당
광역·교육청 기관담당, 운영담당, 센터담당	...	관리담당
분석전문가, 컨설턴트	...	해당 센터의 센터담당

다. 주요기능

- 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승인 및 제출
 - 반영계획 관리
- GIA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 현황·통계 관리
 - 기간별, 과제별 분석평가 실시현황(총괄)
 - 기간별, 과제별 개선의견 및 반영계획 현황
 -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구분 통계 가능
 - 분석평가책임관 등록 현황
 - 교육실적
 - 컨설팅 실적
 - 종합결과보고 현황 등
- 2009년 이후의 분석평가 자료 조회 가능
 -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통합검색
- 알림마당, 공유계시판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의사소통 공간 제공

라. GIA시스템 사용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만 우선 제출

단 계	주요 내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p>체크리스트 작성</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체크리스트작성</p> <p>-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하여 작성</p>	업무담당	
	<p>저장</p> <p>※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 업무담당</p>	업무담당	
	<p>기안</p> <p>○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 ○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p>	업무담당	
	<p>결재 → 전송</p> <p>○ 연계기안을 선택한 경우 -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연계됨 - 체크리스트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 -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 ※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 ※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p> <p>○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p> <p>*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전송대기</p> <p>-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완료</p>	업무담당	
접수	<p>접수</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접수대기</p> <p>○ 체크리스트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p>	관리 담당	기관 담당
검토	<p>체크리스트 검토</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체크리스트의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p> <p>○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 통보' 클릭 ○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분석평가서 제출요청' 클릭</p>	운영 담당	기관 담당
	<p>저장·기안·결재·전송</p> <p>※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p>		

제외통보 시 분석평가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제출

단 계	주요 내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 분석 평가서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체크리스트작성</p> <p>-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p> <p>→ 체크리스트 작성 → 저장 → 분석평가서 작성</p>	업무담당	
	<p>저장</p> <p>※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p>	업무담당	
기안	<p>○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p> <p>○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p>	업무담당	
결재 ↓ 전송	<p>○ 연계기안 선택한 경우</p> <p>-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넘어감</p> <p>-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p> <p>-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p> <p>※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p> <p>※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p> <p>○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p> <p>*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전송대기</p> <p>-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 됨</p>	업무담당	
접수	<p>분석평가서 접수</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접수대기</p> <p>○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는 모두 접수대기로 보내짐</p> <p>○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p>	관리 담당	기관 담당
검토 의견 통보서	<p>○ 최초 작성 시</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해당 과제의 분석평가서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p> <p>-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검토의견 요청 클릭</p> <p>-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통보 클릭하여 절차가 종료 됨을 안내</p> <p>-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오른쪽 하단의 검토의견통보서 작성 클릭하여 작성</p> <p>※ 검토 결과에 따라 왼쪽 상단의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중 하나를 선택 하면 양식 자동 변경됨</p> <p>○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p> <p>- 검토의견 통보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p>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단 계	주요 내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검토 의견 통보서	저장·기안·결재·전송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반영 계획서	○ 최초 작성 시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클릭 ○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서 - 반영계획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	업무담당	
	저장·기안·결재·전송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반영 계획 확인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서 - 반영계획서의 상태값인 '제출' 버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왼쪽 상단의 <input type="radio"/> 수용 <input type="radio"/> 일부수용 <input type="radio"/> 불수용 <input type="radio"/> 중단] 중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 - '수용'이나 '일부수용'인 경우 개선항목 수 및 항목 선택 - '불수용'이나 '중단'인 경우 그 이유 입력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반영 계획 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 반영계획관리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 입력 ※ 반영계획 확인 및 입력을 하여야만 과제가 종료됨 ※ 종합현황판 > 분석평가현황 > 개선현황에서 전체 내용 확인 가능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컨설팅		컨설팅	
단계 (권한구분)	주요 내용	단계 (권한구분)	주요 내용
컨설팅 요청 (업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서 등의 작성 단계에서 컨설팅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 요청도 가능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나의컨설팅 > 일반컨설팅 요청 버튼 클릭</p>	<p>전문가 검토의견 요청</p> <p>(기관담당) *중앙 : 운영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상태값인 '제출'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 검토 의견 요청 버튼을 클릭 ※ 클릭 시 뜨는 메시지에 검토 요청 내용 입력 - 중앙은 선택, 지자체는 필수입력
<p>중앙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자동 요청됨</p>			
접수 (센터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를 담당할 컨설턴트 및 분석전문가를 지정 * 지정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와 분석전문가가 소속 센터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 		
컨설팅 (컨설턴트)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컨설팅 대기</p> <p>컨설팅 내용을 작성하고 컨설팅 실적을 등록</p>	<p>전문가 검토</p> <p>(분석전문가)</p>	<p>*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 대기</p> <p>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작성 후 기안 → 센터 내 결재자가 수정 및 제출</p>

바. 시스템 이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1566-3287, 02-3789-4450)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에 탑재

2.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5.8.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제목개정 2014.9.18]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2.3>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제목개정 2015.2.3]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제10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5.8.3]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와 같다. <신설 2015.2.3>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목개정 2015.2.3.]

2015.8.3>

1. 삭제 <2015.8.3>
 2. 삭제 <2015.8.3>
 3. 삭제 <2015.8.3>
 4. 삭제 <2015.8.3>
 5. 삭제 <2015.8.3>
 6. 삭제 <2015.8.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

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18>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9.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46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530호, 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8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부칙 〈제14443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를 “교육부·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616호, 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6469호, 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법 률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

시 행 령

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법률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4. 생략
-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③ 생략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8. 생략
- 9. 성인지 예산서
- 10~14. 생략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해분석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 ①~④ 생략
-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9. 생략
- 10. 성인지 예산서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②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법 른

제3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행 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마. 「지방회계법」(관련 조항)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3. 생략
- 4. 성인지 결산서
- 5~12. 생략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바. 「통계법」(관련 조항)

법 른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 ② 생략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

시 행 령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나. 시·군·자치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 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계의 명칭
-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3. 통계작성승인번호
- 4. 통계작성의 목적
- 5. 통계작성의 대상
- 6. 통계작성의 주기
- 7. 통계작성의 방법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 2. 통계의 작성 목적
-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시·도·교육청 / 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시·도/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부교육감/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교육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가. ○○시·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도·교육청 / 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가. 법령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산업통상자원부

모성보호 및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저소득층 임산부 추가

행정자치부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훈장 도형 및 제식의 성별 훈장 형태 구분을 폐지하고 동일한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 「상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훈장크기 동일

국방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남군 1년 이내, 여군 3년 이내에서 개선하여 성별 구분 없이 '자녀 1명 당 3년 이내'로 변경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 제49조제3항



국민안전처

피난계획 수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과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을 포함하도록 개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나.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인천광역시

결혼이민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통역시스템을 구축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병원 지정



통역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성별 균형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어촌체험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무장 선정위원회 운영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 개선

※ 어촌6차산업화지원(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사무장 채용대상 마을 선정 시
여성사무장 채용 마을
우선 지원



사무장선정위원회 운영시
여성 50% 이상
되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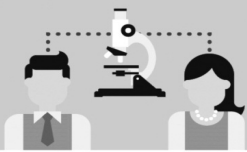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효능 등을 연구·평가하도록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자료는 공공 DB에 포함하여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논문혹찰을 이용한 비만과 황반변성 예방소재 특성 연구 사업

성별에 따라
대상자 구분하여
효능 연구·평가



임상시험 심사자료에
성별차이에 의한 분석지표
반영하도록 관련 지표 개선



다. 계획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경상남도 사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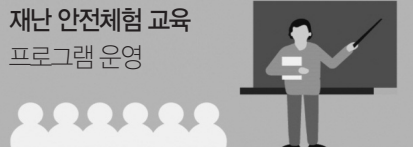
여성,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 수칙과 재난 안전매뉴얼 개발 및 배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2019 재난예경보 체계 구축계획

성별·연령별
특성 고려



재난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사례

구분	평가 전	평가 후
법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양성평등 방송문화>	
	<p>「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은 추상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방송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3개항 →5개항)하도록 개선권고 * 2016.12.2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 세대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p>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있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일방(특히 여성배우자)은 제외되고, 부부 공동명의로도 임차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개선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 2015.7.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6조제1항2호가목)
정책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부) : 학부모의 학교활동 지원>	
	<p>학부모가 맞벌이 가정인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교참여 프로그램이 대부분 학교운영시간에 맞춰 개최되므로 학교참여가 제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모델 개발·보급,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운영시간대 다양화 등 개선권고
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지자체) : 미혼한부모 지원근거 마련>	
	<p>한부모가족은 가구의 부양과 생계, 아동양육을 부 혹은 모 한명이 책임지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미혼모가족지원 조례'를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 '미혼한부모' 지원 근거 마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참고 사이트

가. 국내 사이트

-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 (<http://gsis.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개발·구축한 성인지 통계 정보 포털.
본 시스템은 기존 통계를 영역별로 재정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를 성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 성인지 통계DB (<http://gsis2.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일환으로 구축한 지역 성인지 통계DB.
본 DB는 지역 성인지 통계뿐 아니라 도표로 보는 지역 성인지 통계, 지도로 찾아가는 지역 성인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에 접근할 수 있음
- KOSIS 국가통계모털 (<http://www.kosis.kr>)
국내의 주요 통계를 영역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음
-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정책통계, 교육예측통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DB가 구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HOME > 정책자료 > 통계자료 : 여성가족부 승인통계, 성차별, 성폭력 등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함

나. 국외 사이트

- UNECE Gender Statistics Website (<http://www.unece.org/stats/gender>)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회원국 통계청과 연합하여 개발한 성인지 통계 웹사이트로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
- Gender Stats (<http://www.worldbank.org/genderstats>)
World Bank가 운영하는 성인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국가 통계와 UN 데이터 베이스, World Bank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회조사 내용들을 제공함
- OECD SIGI (<http://www.genderindex.org>)
OECD Development Centre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양성평등의 이론적 개념, 경험적 근거 및 정책적 측면 등 포괄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특히 통계와 측정도구에 초점을 둠
- UN WOMEN (<http://www.unwomen.org>)
UN의 여성정책 통합사이트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UN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함
- UNSD (<http://unstats.un.org>)
UN 통계청 사이트로 UN의 여성과 남성 관련 사회지표 등 UN 통계청이 발간하는 각종 통계책자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정보를 제공함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매뉴얼 - 사업편

발행일 | 2017년 8월

발행인 | 이정희

발행처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

전화 | (052)276-8555

팩스 | (052)276-8556

홈페이지 | www.uwfdi.re.kr
